

	<b>안산대학교 언어치료센터</b> <b>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4-1-11
		제정일자	2024.04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산학협력단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목적) 본 언어치료센터는 안산대학교언어치료센터(이하 언어치료센터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언어치료센터는 안산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분소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설립 목적) 언어치료센터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활 현장에서 의사소통장애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며 제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교육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업무) 언어치료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가. 의사소통 장애 진단 및 평가
- 나. 언어재활 및 언어치료
- 다.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라. 전문가 컨설팅
- 마. 부모교육 및 상담
- 바. 교재 및 교구 기획 및 출판, 판매
- 사. 언어치료 프로그램 연구 개발
- 아. 기타 본 센터의 설립목적에 관한 업무

## 제2장 조 직

제5조(조직) 언어치료센터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.

- 가. 센터장과 부센터장
- 나. 운영위원회
- 다. 감사
- 라. 직원

제6조(센터장과 부센터장)

- 가. 센터장은 언어치료아동보육과 교원 중 언어치료아동보육과 학과에서 추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- 나.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다. 센터장은 센터의 경영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
- 라. 부센터장은 언어치료아동보육과 교원 중에서 언어치료아동보육과 학과에서 추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- 마.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바.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, 센터장의 유고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.

#### 제7조(운영위원회)

- 가. 언어치료센터는 사업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나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다.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, 위원은 언어치료학 전공 교원 및 기타 관련인 중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- 라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마. 운영위원회는 연간 1회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바.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- 1) 센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2) 센터의 정책 수립 및 사업운영, 사업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  - 3)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- 4) 센터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  - 5)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사.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감사) 감사는 안산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감사에 따른다.

#### 제9조(직원)

- 가. 직원은 맡은 업무를 숙지하고 본 센터의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나. 직원의 복무규정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을 준용한다.

### 제3장 재정 및 회계

제10조(재정) 「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및 산학협력단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제11조(회계) 「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에 따른다.

제12조(수당) 센터의 보직수당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4장 보 칙

제13조(업무관장) 본 센터의 업무는 센터장이 관할하며 신속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및 산학협력단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4조(중용 및 세부지침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 정관 및 산학협력단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되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.